※ 굵은선 부분 작성 후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(자영업의 경우) 사본과 함께 취업(자영업)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_

★ 기간내 미 제출시 취업일전까지 구직급여 지급 불가함

※ ⑤번 항목 : 이전 실업인정일 다음날 ~취업 전일

(26232)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
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 영월고용센터
팩스 : 0503-8803-0398
전화 : 033-371-6251

실업인정 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: 5일

★ 신청인 (수급자격자)	①성명	②주민등록번호 -	
	③주소 (전화번호:)		
④ 지정된 출석일 (실업인정일)	월 일	⑤ 실업인정대상기간	월 일 ~ 월 일
⑥지급계좌	변경하실 분만 기재하세요		

⑦ ★ 취업전날까지 실업사실 확인	근로사실	[ ] 없음 [ ] 있음	[근로일:	소득(예정)액:]
	사업자등록 (자영업개시)	[ ] 없음 [ ] 있음	[등록일(시작일):	사업내용:]
	산재휴업급여	[ ] 없음 [ ] 있음	[재해일:	]

⑧ ★ 취업사실	[ ] 취직	[ ] 자영업
	취직/자영업개시(예정일)	년 월 일
	회 사 명	
	전 화 번 호	

「고용보험법」 제44조제2항·제3항 및 제69조의9,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·제66조 및 제93조의2,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·제107조의2 및 제11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,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.

★ 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장 귀하

첨부서류	1. 수급자격증 1부 2. (상해)진단서, 재직증명서, 근로계약서, 면접확인서, 훈련수강증명서, 구직활동 내역서 등 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 제90조에 따른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의 각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 3.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 제9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강증명서(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	수수료 없음

※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.

실업인정 유형	[ ] 실업인정일 변경 [ ] 증명서에 따른 실업인정 [ ] 잠정실업인정 [ ]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실업인정 [ ] 상병급여 청구와 병행 [ ] 유족에 따른 실업인정							
지급 사항	처리	실업인정일수		구직급여 산출명세		지급액		
		미지급사유						
접 수	접수연월일	접수번호	결재	담당	팀장	과장	청장·지청장	결재연월일
	. . .			전결	-	-		. . 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